

● 제287회 ●

서울특별시의회(정례회)

제2차 보건복지위원회

**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**

2019. 6. 17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
수 석 전 문 위 원

【 이정인 의원 대표발의 】

의안번호 650

I. 조례안 개요

1. 제안자 및 제안경과

- 가. 제안자 : 이정인 의원외 19명 발의
- 나. 제안일 : 2019. 5. 21.
- 다. 회부일 : 2019. 5. 24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-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로 “정신장애”를 들고 있는바, 단순히 정신적 장애를 해촉 사유로 규정하여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, 이를 “장기간의 심신쇠약”으로 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‘정신장애’를 ‘장기간의 심신쇠약’으로 용어를 변경함(안 제5조제1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정창훈)

1 개정안의 취지

- 본 개정안은 제5조제1호에 규정된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인 “정신장애”라는 용어가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작용할 우려가 존재하므로 “장기간 심신쇠약”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임.

2 주요사항 검토

가. 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 변경(안 제5조)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위원의 해촉) 서울특별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 1.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	제5조(위원의 해촉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----- -----

- 본 개정안에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‘정신장애’ 규정은 2017년 보건복지부 표준 조례(안)에 따라 당초에는 위원 해촉 조항에 당시에는 ‘심신장애’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

었으나 ‘심신장애’라고 규정할 경우 신체장애도 제외 대상이 되는 등의 문제로 인해 ‘정신장애’만 제외의 대상으로 규정하였음.

- 그로인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「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의 제5조 위원의 해촉 사유로 “정신장애”로 규정하고 있으나, 정신장애의 정도를 언급함 없이 단순히 ‘정신장애’만을 근거로 위원의 해촉 사유로 드는 것은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‘장기간의 심신쇠약’으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3 종합 의견

-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 제5조제1호의 위원의 해촉 사유인 “정신장애”는 단순히 ‘정신장애’만을 근거로 위원의 해촉 사유 근거로 규정으로 하는 것은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작용할 수 있고, “정신장애”의 정도를 언급함 없이 행정 편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률에서 장애에 대한 차별로 보일 수 있으므로 ‘장기간의 심신쇠약’으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□ 위원회 개요

- 설치근거 : 「사회보장급여법」 제40조,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
 - ※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」 제정 및 위원회 구성 : 1993. 5.11
- 기능 및 역할
 -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방향·시행계획 등 중요사항 연구·조정
 -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심의·자문
 -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및 사회보장추진과 관련한 중요사항 심의·자문
 -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
- 소요예산 : 18,000천원 (시비 100%)

제13대 사회보장위원회 현황

- ◆ **위원수 : 총28명 [위촉직 26, 당연직 2]**
 - ※ 여성비율 : 46%(남 15, 여 13) / 당연직 : 복지본부장, 여성정책가족실장
- ◆ **임 기 : '18.10.26 ~ '20.10.25(위촉일로부터 2년간)**

□ 추진실적

- 사회보장위원회 회의 개최 : 1회('19. 2.20)
 - '19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4기 사회보장기본계획 심의
-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 소위원회 개최 : 1회('19. 3.15)
 -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